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이 만 종**

차 례

- I. 서론
- II. 환경범죄에 관한 이론적 검토
- III.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
- IV. 환경형법의 규율방안
- V. 결론

I. 서론

오늘날 환경오염 내지 환경과괴등 환경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인간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세계각국은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배경, 경제적 능력등 상황을 달리하면서도 공동의 위기로 대응하여, 이제 환경문제는 금세기 최대의 공동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보호 문제에 관하여 각국에서는 각종 입법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그 내용도 단순한 행정법적 규제가 아닌 형법적 차원에서의 제재 강화의 색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가 지니는 도그마적 이론에 관한 충분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환경범죄 내지 환경형법에 관한 논의의 해석론적 시각이나 입법론적 시각이 뚜렷

* 본 논문은 2007년도 호원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해 질수 있다.¹⁾

따라서 환경오염과 환경침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형사법상 규제적 측면을 검토해보는것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 할수 있다.

사실 과거 환경문제의 규율에 있어서도 형사법적 제재가 빈번히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제재를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환경보호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단순한 의무수행을 강제하는 수단정도로 취급하고 형법고유의 기능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형법이 기여할수 있는 몫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환경보호에 대한 형법의 역할을 새로이 분석, 강구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형법고유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기능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환경범죄에 관하여 형사법적관점에서 이를 전통적인 형법이론으로 해결가능한가하는 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및 그 시행상황을 검토하여 환경보호 관련 행정형법 및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대한 방향제시등을 함으로써 환경범죄예방을 위한 향후의 이론발전 및 입법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환경범죄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환경범죄의 개념

환경범죄(Environmental crime)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종래에는 주로 공해범죄, 공해사범이라는 말

1) 우리나라도 환경범죄를 형법전 각칙의 새로운 범죄로서 신설하자는 제안이 「형법개정 법률안 (1992)」에 제시 수용되었고,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별 저항감없이 받아들여져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을 전후하여 일본으로부터 공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1963년 이른바 공해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일상용어로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날이 갈수록 그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공해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의 기준으로 공해방지법에서 시도한 개념정을 살펴보면 ‘공해’는 ①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및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②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③소음, 진동의 경우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생활환경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된다.²⁾

이 정의에 따르면 공해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생활환경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피해의 발생원인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만이 열거되어 주로 산업공해를 예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해의 실질적 범위가 매우 축소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공해대책기본법은 제 2조 1항에서 “공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상당범위에 걸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및 악취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의 구공해방지법에 비하면 그 원인측면에서 다소 확장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방지적, 소극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³⁾ 이는 형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에 착안하여 그 법익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공해범죄로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선진각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해문제를 환경문제로 파악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⁴⁾

2) 구공해방지법 제 2조 1호 참조.

3) 자연환경 자체의 보전을 위하여 일본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92호로써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4) 영미계는 environment crime, 독일은 Umweltkriminalita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만 공해범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공해대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

특히 환경범죄의 개념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형사체벌을 단순히 환경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부속물로 이해하여 왔던 종래의 타성에 반성을 가하고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범죄와 형벌이라는 기본적 문제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형법고유의 분석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장점이 있다.⁵⁾

2.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대책

영국의 신멜더스주의자인 Garret Hardin 은 1968년에 Science지에 ‘공공목장의 비극’ (Tragedy of Commons)이란 우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최대한 열 마리의 소가 방목될 수 있는-열마리가 있을 때만이 풀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생산이 가능한 수용력(carrying capacity)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어떤 공공목장에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수용력의 한계를 초과하여 소를 집어넣게 되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공목장은 이 열한번째의 소 한 마리 때문에 모든 소들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풀을 뜯게 되고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공공목장을 파괴하는 이 마지막 소 한 마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공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조직이나 상황에서도 공공이익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타나기 마련이다.⁷⁾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이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한 법적규제의 필요성 또한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에 있어서도 자연의 개발에 의한 인간의 생활조건의 향상의 추구는

전법의 양대법률을 기본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법체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제 2회 형사정책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5-16면.

6) G. Hardin, Science 162(1968), pp.1243-1248 (이형국박사기, “환경범죄와 형법의 역할”, 「형사법연구」 제 3호, 한국형사법학회, 1990, p.31에서 재인용).

7) Hardin은 이와같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 ‘계몽된 소수의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여 대중의 접근 제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드디어는 환경의 파괴라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한 환경의 보전·회복도 이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세계각국은 급박한 공업화와 더불어 환경보호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가치에 대한 재인식, 환경공유의 사상, 산업우선 내지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정책을 초월한 인간존엄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 우위의 사상 등과 더불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래의 시민법 원리가 아닌 새로운 법리의 정립이 논의 되고 있다.⁸⁾

일반적으로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대책으로는 행정적 규제,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⁹⁾ 그러나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대책중에서 행정적규제와 민사적구제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형사적제재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아직 요람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형사적제재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형사법의 강력성은 최후적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자체에 대한 법의성이 점차 일반적으로 인식 되어짐에 따라 그동안 주로 행정법적인 규제를 가지고 환경문제를 대처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형법속에 환경침해에 대한 관계처벌규정을 두려는 경향이 대두하게 되었다.

3. 환경범죄의 특성

지금까지 환경침해 행위를 형법적 측면에서 일반범죄행위로 바라보는 범죄성의 인식이 왜 희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로는 물론 범죄현상의 변동에 대한 인식과 그 대상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한데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도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환경침해 행위가 갖는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수있겠다. 첫째, 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에 의해 공중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둘째,

8) 김철수, "환경권", 「환경법연구」제 3권, 한국환경법학회, 1981, 32면.

9) 김종원, "공해의 형법적 규제",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구원), 1987, 130면.

침해의 간접성이다.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을 배출, 폐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공중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은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를 통하여 대기·토양·수질 등이 오염됨으로써 2, 3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이 침해가 간접성을 갖기 때문에 형사법적 제재시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게 된다. 셋째, 침해의 완만성을 들 수 있다. 침해가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환경범죄는 대부분 유해물질이 서서히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야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초래케 한다.

즉 개개의 배출, 폐기 그 자체만으로는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반복과 유해물질의 축적에 의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이다. 환경범죄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침해를 가하기 때문에 위협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원인불명의 기이한 질병으로서 또 시간이 경과 하면서는 그것이 환경침해에 의한 피해라는 의식조차 없이 그대로 방치되기 쉬운 것이다. 더욱이 피해가 명료해 진 다음에도 책임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인과관계의 유무, 즉 가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논쟁이 되며 따라서 원인불명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논리가 기업측에 의해 주장되기 쉽고 공소시효의 기간산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다섯째로는 침해의 상규성(정당행위성)을 들 수 있다. 유해물질의 배출, 폐기행위가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체의 일상적인 것이라는 점 때문에 환경범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구제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C 에 들어와서 환경침해의 심각성을 각국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행정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단속, 처벌하게 된 것이다. 여섯째, 환경범죄의 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침해 및 그로인한 사람의 생명, 건강에 대한 위협은 완만하게 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 폐기하기 곤란하다. 여기에서 행위자인 자연인(종업원) 과는 별도로

기업자체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야기된다.

4. 환경범죄에 있어 형사책임의 주체

환경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의 주체를 누구로 할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발생원인이 누구에의해 야기되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경범죄는 발생형태에 따라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구조형과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시설이나 작동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결함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하여 공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경우가 구조형인데 이때는 생산, 배출 또는 기업설비 등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경영대표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시설이나 시스템에는 결함이 없으나 생산활동의 운용면에서 결함이 생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사고형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현장책임자나 임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노동자 등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1) 법인의 범죄주체성

일반적으로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수없다. 다만, 특별법규의 단속상 목적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범죄의 주체가 아니라 형벌의 주체로서 취급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러나 환경범죄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정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환경범죄에 있어서는 가해행위가 복수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더구나 현대의 복잡한 기업조직속에서 집단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니만큼 어떤 행위에 의하여 언제부터 발생한 결과인지도 분명치 않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은 개인본위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책임을 취급함에 있어서 범죄의 구체적 피해발생에 밀접한 행위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환경범죄에 있어서 책임과 재량권에 있어서 현저하게 열등한 위치에 있는 하급관리자나 기술자를 중심으로 처벌함은 부당하며 행위자의 특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영자 내지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지만 형법상 범죄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전통적 입장에 의하면 법인에게서는 자연인과 달리 현실적인 의지와 행위가 있을 수 없고 현행 형벌구조상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인의 처벌은 각종 행정형법, 경제통제법, 조세관계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위반행위를 실행한 자를 벌하는 동시에 사업주나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¹⁰⁾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은 법인 자체의 행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자의 범죄에 대하여 법인이 사용자로서의 선임·감독상의 업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은 범죄주체로서의 책임이 아닌 단속의 편의상 부담하는 특수한 책임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법인에는 비난의 가치있는 의사가 없고 법인에는 실행행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견해는 형법상 도의적책임론을 강조하는 입장에 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점차로 증대하여 왔고, 활동영역도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온 것에 주목한다면 위와같은 전통적 견해에 의해서 법인의 범죄주체설을 부인한다는 것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하여 정의·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증대하는 기업범죄 특히 환경범죄에 있어서 기업 메카니즘의 운영에 결함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해물질의 배출이 있었으나 행위자를 특정

10) 개별환경행정법규는 대부분 이 양벌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형법인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제 5조에서 일본의 공해범죄법을 본받아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이론 으로는 법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대두되는 기업범죄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외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점,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 선다면 법인에게도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양벌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책임의 근거를 과실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법인의 범죄주체로서의 이론구성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2) 기업체 책임론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만 하여도 기업이란 조직체는 고용력 창출을 통한 일자리제공,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의 공급, 국민소득증가에 예의 기여로서 사회에 보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사회구성원인 소비자나 지역주민 역시 기업의 이러한 책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향상에 따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의 내용과 질의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특히 공해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론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이 날로 증가하는 법인의 환경범죄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서 제기된 이론이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론으로 기업체 책임론이 주장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기업재해에 있어서는 기업의 조직체 활동의 존재양식 그 자체가 문제이기때문에 기업 조직체 활동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각 개인의 행위를 별도로 떼어서 논할 수는 없으며 기업은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 그 조직체활동을 먼저 전일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행위가 조직체 활동 속에서 이루는 역할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형사책임을 논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 이론은 기업조직체의 실태를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기업조직체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고 그의 위법활동을 억지시키기 위하여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기업조직체 책임론을 채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가벌적 위법성이론이나 신뢰의 원칙의 적용 등에 의해 조직활동 분담자 중의 어느 누구에게도 가벌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체의 조직활동은 가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허용된 위험의 범리를 토대로 한 신뢰 원칙이나 가벌적위법성이론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행위자의 형사체재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사회적 강자인 기업체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둘째, 기업체의 조직활동이 전일체적으로 파악되므로 조직활동 분담자의 교체-예컨대 대표자나 공장장의 교체-에 의하여 기업체가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해물질은 장기간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의사의 연락이 없었던 경우에는 후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승계적 공범이론을 적용하기도 곤란하게 된다. 이 경우 통설에 의하면 개인행위자의 업무에 관련된 가벌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주인 기업체도 처벌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기업조직체 책임론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기업체의 조직활동을 전일체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에 속하는 A, B, C 세 개의 공장에서 각기 아황산가스를 배출하여 주민이 호흡기질환에 걸린 경우 각 공장의 배출만으로는 그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기업체 자체를 범죄행위 주체로 보기 때문에 기업체간의 동시범은 물론 공범도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이익추구활동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케 하는 사회적 강자로서의 기업체는 주민과 소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유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작은 불안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체, 소비자, 주민간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체는 그의 조직활동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생각컨대 오늘날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건강이 심각한 위협하에 놓여져 있다는 점과 기업체는 사회적 강자로서 개인에 의한 위법행위에 비해 기업체의 행위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론적 한 방편으로 기업 조직체 책임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

우리나라에서 공해내지 환경오염에 대한 최초의 실정법적 대책은 1963년 4월 5일 법률 제 1436호로 제정된 구공해방지법에 의해서였다. 그 후 이 법은 1971년 1월 22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더욱 국민들의 관심이 공해로부터의 탈출과 쾌적한 환경을 지향 하는것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또한 세계각국의 일반적인 추세도 환경오염과 그로인한 건강침해가 이제는 더 이상 산업발전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 내지는 필요악이 되어서는 않되며 환경보호는 산업화에 못지 않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시급한 인간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우리도 종래의 태도와 시각을 반성하면서 선진각국의 환경권 사상을 받아들여 종래의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8호로 환경보전법을 그리고 법률 제 3079호로 해양오염방지법 을 제정, 공포하게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환경침해행위에 대해 행정법적인 측면 일변도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어왔으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형법으로 제재를 강력하게 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특별형법으로 규제 내지는 제재를 가하는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1. 일반형법에 의한 제재

전통적 형법이론에 토대를 두고 개인적 범죄를 전제로 형성, 발전된 현행 형법전에 의해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환경범죄에 대해 현행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상 환경범죄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은 바, 살인죄(제 250조), 상해죄(제 257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 268조), 손괴죄(제 250조), 식용수 독물 기타 유해물 혼입죄(제 192조 2항), 식용수 또는 수원 독물유해물 혼입죄(제 193조 2항), 음용수 혼독치사상죄(제 194조)가 그에 해당한다.¹¹⁾

따라서 환경침해행위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구체적인 피해의 결과가 발생된 때, 그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살인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타인의 재산에 침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음용수 또는 수원 독물 기타 유해물 혼입죄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은 개인적범죄를 전제로 한 전통적 형법이론에 중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환경범죄행위에 현행 형법조문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첫째, 환경범죄에 속하는 행위는 대부분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행해지므로 죄의식이 아주 희박하여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둘째, 환경범죄의 특성인 간접성, 완만성,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 셋째, 행위의 주체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같은 성질을 가진 기업이 공단과 같은 동일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어느 기업에 의해 환경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2. 특별형법에 의한 제재

우리나라에서는 1991.5.31.법률 제 4390호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바, 이는 일본의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보면 제 1조에서 “이 법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환

11) 김종원, “공해의 형사적제재”, 법무자문위원회 논설집 제 4집, 1980, 198면.

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한 다음 제 2조에서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8호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동조 제 1항),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동조 제 2항), 제 1항과 제2항의 경우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 했다(동조 제 3항).

또한 제 3조는 제 2조에 대한 과실범 및 업무상과실범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제 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2항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 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 4조에서는 누범의 특수가중을 규정하여 누범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 5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조 또는 제 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 6조는 추정규정으로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당해 배출만으로도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배출한 자가 있을 경우에 그 물질의 배출에 의하여 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한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배출행위와 위험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을 그 자가 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징은 첫째, 이 법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형법이론의 틀을 벗어나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이다. 즉 유해물질의 배출과 공중의 생명, 신체의 위험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추정규정을 둠으로써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발생한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자기회사가 배출한 유해물질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은 문제가 된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그러한 입증이 성공하지 못하는 한 그 회사가 가해자로 단정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범죄의 범위를 기업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로는 환경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실제운용에 있어서의 효용성은 일본에서 공해범죄법의 운용실태와¹²⁾ 관련하여 볼 때 의문이 가는 점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표현이 너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이 법의 적용대상을 산업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국한시키고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오염원이 혼합된 경우에는 사실상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이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넷째, 양벌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기업의 최고 경영층이 처벌되기는 어렵고 실무선에 있는 말단사원만이 속죄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이다.¹³⁾

3. 행정형법에 의한 제재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환경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인 환경행정법규에 의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환경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환경행정법규가 바로 환경보전법이었다. 환경보전

12) 일본에서의 공해범죄법(사람의 건강에 관련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실적을 보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기업들이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경찰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매년 수 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마저도 모두 과실의 입증 불능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13) 이러한 여러 문제점은 일본의 공해범죄법에 대한 비판내용과 같은 것이다.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총칙 (제 1장), 배출시설 (제 2장), 대기보전 (제 3장), 소음진동등 규제 (제 4장), 수질 및 토양의 보전 (제 5장), 비용부담 (제 6장), 방지시설업 (제 7장)등에 관한 사항이었고 제 11장에서 벌칙규정을 두어 환경범죄의 성질,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제 66조에서 제 69조에 걸쳐 4종류의 벌칙을 정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보전법 이외에도 환경침해적 성격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는 도로교통법, 문화재보호법,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사업법, 농약관리법, 축산법, 초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축산업법, 어항법, 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광업법, 석유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중기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향만법 등이 있으며 이들도 대부분 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전법을 비롯한 제반 환경관계특별법과 관련하여서 법적규제가 주로 환경오염의 억제에 편중되고 환경보존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바, 14) 정부는 그때까지의 환경관계법을 대신하여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환경정책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행정법 체계를 마련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환경보전법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IV. 환경형법의 규율방안

1. 환경형법의 정비방안

(1) 환경형법의 독자성 인정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환경형법을 환경행정의 원만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14) 구연창, “환경규제의 실태와 개선방향”, 법정신문 제 27호, 1989.8.14, 8면.

제재장치로 생각해 온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형법에 그 독자성을 인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범죄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환경침해 내지 환경오염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환경오염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날로 다양화, 세분화 되어가는 환경관계법령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2) 환경형법의 입법기술

형법전에의 환경범죄 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유래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한 제반여건의 변화와 구체적인 문제사안의 특수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입법의 입법기술은 가능하면 고전적인 범죄구성요건의 규율방식에 따르되 필요한 최소한도에 있어서 백지형법의 입법기술을 수용하여 환경관계 행정법규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3) 환경형법의 보호법익

환경형법의 보호 법익을 단순히 사람의 생명, 건강 등과 같은 고전적 법익에 관련지을 때 인과관계의 입증문제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환경형법은 고전적인 법익의 침해에 집착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기술을 사용하여 인과관계 문제를 우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환경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설정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일반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으로서 가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일반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환경보호의 제

일차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환경형벌법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범죄, 비신분범의 규정이 개별 환경행정형법 규정에 대한 보충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환경형법에 필요한 입법내용

(1) 무허가 조업행위 및 비정상 조업행위의 형법전 편입

무허가 조업행위와 비정상 조업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는 지금까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단속에 있어서 실무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조문이다. 그런데 무허가 조업행위 및 비정상조업행위는 일정한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조업하는 사업자를 그 구성요건의 주체로 삼는 신분범으로서 환경오염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을 확보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사업자 등 신분자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단속의 차원을 넘어 형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일반국민이 넓게 그 의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형법전에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2)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오늘날 환경범죄는 특히 기업형범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 배출시설을 가동시켜서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면서도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환경관계 행정형법이나 특별형법인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위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으로 기업형 환경범죄에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 강구 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범인을 처벌하거나 또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를 처벌하려면 그 전제조건

으로 그 법인이나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환경범죄를 범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환경범죄의 입증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만일 특정한 종업원이 오염 배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소위 기업조직체 책임론이 주장되고 있다. 이 기업조직체 책임론은 일단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환경오염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매우 경청할 만한 것이고 앞으로 기업형 환경범죄의 대처방안으로 연구, 검토가 계속되어야 하고 입법론상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환경범죄에 대한 집행의 효율화 방안

(1) 환경범죄 단속에 대한 인식변화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지금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단지 하나의 부속수단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범죄도 살인, 절도, 방화 등과 같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형사범죄와 동일한 차원에서 논해져야 하며, 환경범죄가 내포하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유해성에 걸맞는 강력한 형사소추가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환경범죄를 단순한 행정법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서, 환경당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를 형사법적으로 사후 보완한다는 타성적인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즉 환경범죄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의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환경범죄 단속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2) 형사소추기관과 환경행정관청의 관계 정립

외국의 실증조사나 또는 국내 실무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환경보전업무에 있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소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관청이 그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미래지향적, 형식적, 합목적적 법집행을 지향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작용의 속성에서 오는 배출시설 사업자와 행정관청의 협력 내지 유착관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제 3의 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제 3자적 입장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형사사법기관이 주목된다.

(3) 실무 인력의 전문성제고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의 내부에 환경범죄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찰은 환경범죄의 적발과 수사를 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은 전국적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형사소추의 방침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서를 확보하고 교육기관을 두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문요원을 길러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원의 경우에는 환경범죄를 전담하여 재판하는 부서를 특화 발전시킬 것이 요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환경범죄의 재판에 있어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4) 시민의 감시체계 개선

아무리 형벌법규를 완비하고 형사소추기관이 그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모든 국민이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각자가 서로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할 때 비로소 환경보전은 실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촉구하며, 아울러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형사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으로서 현재는 매우 국한된 제도이기는 하나 형사소송법상의 제정신청제도의 범위 확장으로 건전한 민간활동이 국가의 정상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5) 기업의 환경책임 의식 고양

기업의 환경적 책임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환경범죄는 경제적 발전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왜 다수의 환경범죄는 기업형범죄,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거대한 공장시설을 가동하여 공해유발을 많이 하면서도 이익추구에 비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막대한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기업도 이에 대한 환경적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보호 활동은 법적 의무사항을 넘어선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V. 결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경제발전이 되어 생활이 편리해져도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정책과 산업화 우선화에 따라 우리사회는 그동안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경험하였고, 또 그 위험의 우려도 점점증하여 이제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담보하고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법익보호의 경우처럼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단순한 행정작용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형사체계의 수단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환경침해행위의 범죄행위성과 이에 대한 형벌법 체계인 환경형법에 관하여 검토와 보완이 절실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환경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행위자체 및 그로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의 야기행위를 모두 환경범죄 라는 개념속에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환경범죄는 기존의 전형적인 형법상의 범죄와는 구별되는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범죄이론 으로는 충분히 대응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기업내의 업무담당자가 환경범죄를 범하였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업에게도 감독책임을 물어 양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기업의 환경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범죄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여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환경범죄에서도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강자인 기업을 옹호하고 약자인 일반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실의 인정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당시 행위자에게 결과발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즉 위구감이라도 있었을 때에는 과실을 인정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대책으로는 일차적으로는 행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겠으나 최근 환경자체의 법의성이 일반적으로는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분산되어 있는 환경침해행위에 관한 처벌규정들의 조화 및 통일적인 제재의 필요성, 환경침해행위의 가벌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여 환경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형법적인 차원에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각국이 다투어 환경범죄규정을 형법전속에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앞선 경험과 실천상황을 적극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 환경형법의 진로에 많은 참고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따라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론적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은 있겠

지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증가하는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비추어 볼때 매우 다
행스런 태도라고 하겠다.

또한 입법론적으로는 환경형법의 행정법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부각시키고 구체적 법익침해에 집착하기 보다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취하여 인과관계 입증곤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
정부문의 환경침해행위에 한정하지 말고 국민전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형법전내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범죄에 대한 국민일반의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인 참
여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환경의 감시자라는 역할을 자임하고 보다 깊은 관심
과 참여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사후적처벌 보다는 사전예방한다
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고 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고전적 자유주의적 형법관
이나 행정지도적 타협적 환경행정 관행에 비추어 보면 매우 처벌지향적이라는 인
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맹목적인 처벌만능의 사상에 입각한 것은
아니며 형법이 가지고 있는 법익보호의 최종적 수단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환경문
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에 서있는것이다. 환경범죄의 형법전에
의 도입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가지고 있
는 제재방안을 효율적으로 재판성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중대문제인 환경과피에 보
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훌륭한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현호, “환경법의 기초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 25권, 한국환경법학회, 2003.
- 구연창, “공해법의 체계적연구(2)”, 「법조」, 1976.
- 「환경법론」, 법문사, 1987.
- “환경규제의 실태와 개선방”, 「법정신문」 제27호, 1989.8.14.
- 김춘환,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환경보호정책의 과제”, 「환경법연구」 제26권, 한국환경법학회, 2004.
- 김일수, “우리나라와 서족에서 환경보호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 김종원, “공해의 형법적규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법무연구원, 1987.
- “공해의 형사적제재”, 「법무자문위원회논설집」 제4집, 1980.
- 김철수, “환경권”, 「환경법연구」 제3권, 한국환경법학회, 1981.
- 노명준, “국제환경법의 원칙”, 「환경법연구」 제24권, 한국환경법학회, 2002.
- 서거석,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이병극, 「환경학개론」, 삼영사, 1984.
- 이만중, “환경범죄처리상 문제점과 입법적해결방안”, 「환경법연구」 제27권, 한국환경법학회, 2005.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 이철, “공해범 처벌에 관한 소고”, 「검찰」, 제1집, 1988.
- 이형국·박상기, “환경범죄와 형법의 역할”, 「형사법연구」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1990.
- 조병선, “형법개전과 환경범죄”- 형법개정시안의 환경범죄에 관련된 조문에 대한 의견서 - 한국형사법학회, 1991.
- 최철호, 「지방분권개혁과 환경법의과제」, 「환경법연구」 제27권, 한국환경법학회,

2005.

J.Baumann "Der Strafrechtliche Schutz der menschlichen Lebensgrundlagen",
ZfW, 1973.

J.Herrmann, "Die Rolle des Strafrechts beim Umwelt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StW91, 1979.

A.Kaufmann, "Tatbestandmassigkeit und Verursachung in Contergan
Verfahren", JZ, 1971.

<Abstract>

The Criminal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al Criminality

Lee, Man Jong

The concept of protecting environment by criminal law is quite novel in Korea. The growing importance of criminal law relating to environmental crimes can be impressively demonstrated by spectacular ecological destruction as well as lingering pollution. In the densely populated and highly industrialized Republic of Korea, the last 20 years have seen a growing realization that any acts harming and endangering the environment must be opposed using the instrument of criminal law. An 1991 officially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Reform of the Korean Criminal Laws")proposed "Draft of New Penal Code" (a governmental proposal) include proposals to criminalize behaviors that pollute environment by dangerous emission and create concrete danger to life and limb, In addition to a Special Regulatory Act on Environmental Crime of 31.

May 1991 (Law No.4390), pursuant to Japanese Example - Law for the Punishment of Cri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Adversely Affects the Health of Persons (Law No.142, 1970)-, was enacted. This special criminal law tried to control polluting activities by traditional penal-code-type definition of offences. But the Law, Like the Draft of New Penal Code, did not succeed to solve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such method. Instead, the Law exposed the difficulties like Japanese experience.

주 제 어 : 환경범죄법, 환경오염, 산업화, 환경파괴, 오염제거

Keywords : Environmental Criminal Law, Environmental Pollution, Industrialized, Environmental Disruption, Decontamination